

「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」 시범사업 안내

1 목적 : 중소기업 사업주 업무부담 경감 및 전자카드 사용 촉진

2 사업 안내

- (사업소개) 업무대행기관이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위임 받아 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퇴직공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, 업무대행기관에게 신고대행지원금 지급

〈 지원금 지급 조건 〉

① (공사금액) **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**

- ※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시점 기준 금액으로, 공사예정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금액 기준
- ※ 공사예정금액이란? 설계금액 + 부가가치세 +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

② (전자카드 단말기 설치) **공사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**

- ※ 3억원 미만 공사도 단말기를 설치해야만 지원금 적용 대상으로 인정

③ (전자카드 사용) **전자카드 사용일수가 1일 이상이어야 함**

- ◆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위임사업장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하며, 조건 충족 여부(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)는 월(신고년월)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

- (지원금액) 사업장(현장) 당 6,000 원 / 월

- ※ 지원 상한액 : 업무대행기관 당 최대 30백만원(반기 15백만원)

- (지원기간) '25.1월 ~ 11월

- (신청시기) 총 2회 ('25.7월 이후, '25.11월 이후)

- (신청방법)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이메일로 제출

- ※ 신청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업무대행기관 대상 간담회 추진 예정('25.3월 중)

3 문의처 : 이메일(eassist@cw.or.kr.) 또는 유선(02-519-2133~7). 끝.